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임대사업자의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7. 13. ~ 8. 14., 2023. 9. 25. ~ 10. 6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
2.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·심판청구
3.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
4.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

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) ① ~ ⑧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”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체 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 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 고 산정한다. 1.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 신청 · 심사청구 · 심판청구 2.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 의신청 · 심판청구 3.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 구 4.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 소송
제5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”란

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472